

제18장 최종 규정

제18.1조 부속서, 부록, 부속서한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, 부속서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제18.2조 개정

1. 어느 한쪽 당사국은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2.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권고 후,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 또는 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, 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.
3.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제18.5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.

제18.3조 가입

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집단도, 그 국가나 국가집단과 양 당사국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건에 따라, 그리고 각 당사국과 가입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따른 승인 후에,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8.4조

준속 및 종료

1. 이 협정은 확정되지 않은 기간 동안 효력이 있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제18.5조

발효

1. 양 당사국은 양국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한다.
2.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을 비준한 경우, 그 당사국은 그러한 비준으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그러한 비준, 승인 또는 수락을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다.
3.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양 당사국이 그러한 비준, 승인 또는 수락을 서로에게 통보한 경우,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.

제18.6조

정본

이 협정은 한국어, 아랍어 및 영어로 2 부씩 작성되었다.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차이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[], []에서, 한국어,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

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위하여